

구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9월 10일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이에, 모례정 일대를 신라불교 전래역사의 현장으로 전승·보전하고 불교문화의 전시·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8,066	—	28,066	100.0	
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	11,114	증) 16,952	28,066	100.0	
농림지역		16,952	감) 16,952	—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가	도개면 도개리 328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16,952	16,952	100% 이하	신라불교문화 초 전지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라.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희 철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용도지역(변경) 지정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28번지 일원이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됨.
- 이에, 모례정 일대를 신라불교 전래역사의 현장으로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관, 역사관, 숙박시설,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을 2011 ~ 2015년까지 약22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본 사업계획 전체 면적 28,066㎡ 중,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16,952㎡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함 이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문화시설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 향후 행정절차는,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변경신청, 관련부서협의 등,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 후, 결정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의견 채택

붙 임 : 의견서 1부

구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 건 서

□ 사업 개요

1. 사업명 : 도시관리계획(안)
2. 위 치 :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일원
3. 규 모 : 부지 28,000m², 건물 3,000m² 정도
4. 기 간 : 2011 ~ 2015년
5. 사업비 : 22,858백만원(국비16,000, 도비2,058, 시비4,800)
6. 내 용 : 불교문화역사관, 체험관, 스토리텔링관, 아도화상길 재현 등

□ 의견 사항

- 3대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인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일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 모례정 일대를 신라불교 전래역사의 현장으로 전승·보전하여 지역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반영함이 타당하며,
- 본 사업 대상지 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